



통권 486호

2024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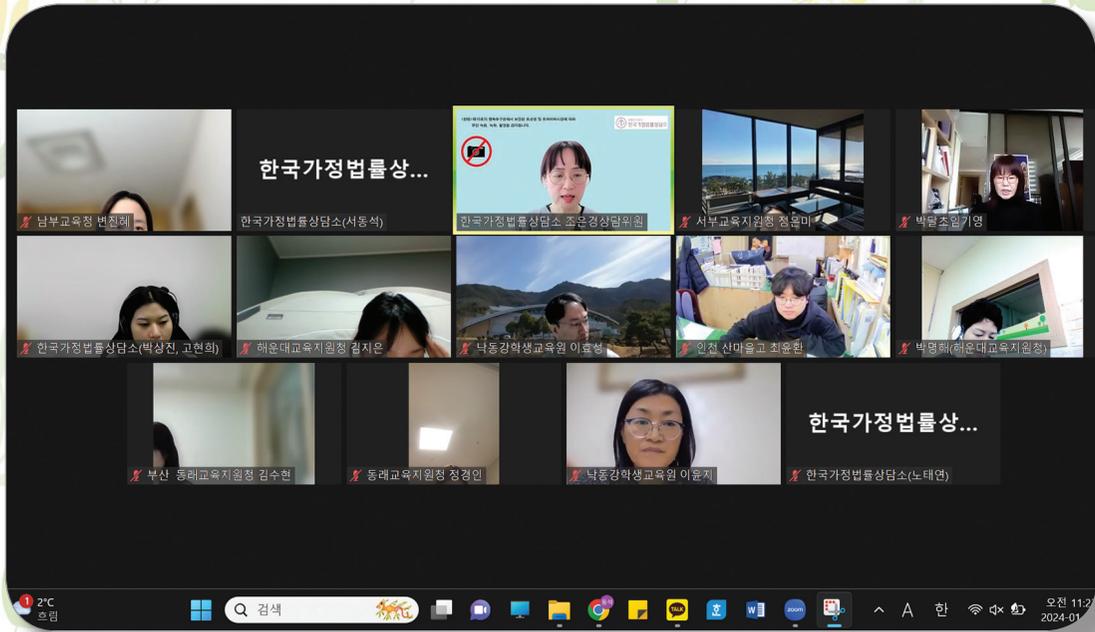
#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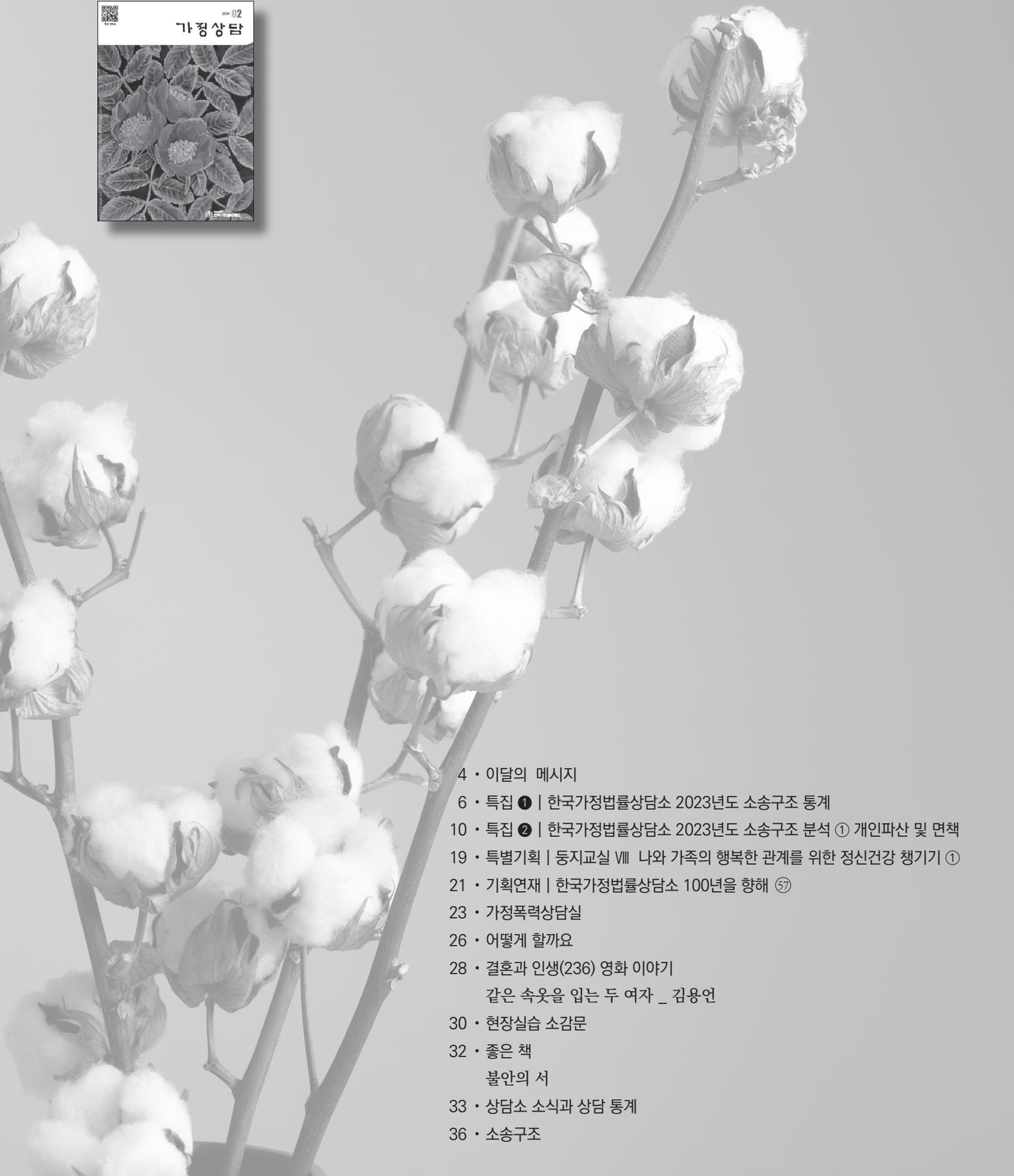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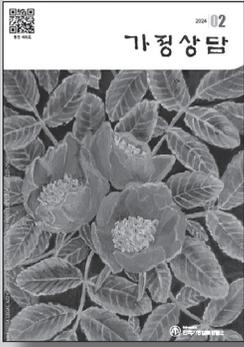
상담소 교육부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은 이번 연수가 가정과 학교생활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강좌를 주변에 소개하고 싶고, 앞으로도 꾸준히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관련 기사 34번)



본소에서 법 교육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겨울방학 대학생 현장실습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수습이 실시되었다. (관련 기사 34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공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 : 정직하게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소송구조 통계
- 10 · 특집 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소송구조 분석 ① 개인파산 및 면책
- 19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①
- 21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
- 23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어떻게 할까요
- 28 · 결혼과 인생(236) 영화 이야기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_ 김용연
- 30 · 현장실습 소감문
- 32 · 좋은 책  
불안의 서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사회로

#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에 더 적극 나서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003년 무렵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시선을 배제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권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당시 남성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결혼 문제를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를 둘러싼 과제가 ‘다문화가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가정의 한 형태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주 관련 법적, 제도적 준비를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문제를 아우르는 상담소에서도 일찍부터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상담이 증가하면서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가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는 정기적인 통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사업, 가족캠프 등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국제화 시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상담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8년 10월부터는 다문화가정의 법률상담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즉 외국인 과 내국인 사이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간 발생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사이 문제에 대한 영어상담을 시작한 후, 2009년 2월부터는 영어상담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더욱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입니다. 뿐 만 아니라 2009년 4월에는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당시의 현황과 법과 제도, 전망 등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주제가 현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심각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등 인구문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사회도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보며 한국계 미국 이민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세대와 한국계 미국인으로 뿌리내리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는 2세대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단절되는 부모와 자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들을 적잖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비슷하게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에도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인인 자녀들과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 사이에 단절과 소외가 가정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될 것이기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위해 더 세심하게 사회통합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특히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이 갱단의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동시에 잠재적 경제 성장에까지 위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민 2세들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니,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회적 과제의 연장선에서 자유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니,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은 전 세계가 사회구성원 전체를 염두에 둔 진정한 소통과 통합에 깊은 관심을 두고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도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이주 노동자 없이 유지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통합을 절실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2023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 1,106건의 소송구조 진행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
- 전국업무협력기관 및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저변 확대
- 97.6%의 높은 승소율로 종결

### 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사업 특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사업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가정폭력,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미성년후견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프로젝트 법률구조 사업 지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소외계층,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소송구조와 양육비이행확보, 위탁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특화하여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의 소송구조는 본소 소속변호사들과 전국 백인변호사단 가입변호사(2024년 1월 현재 562명)들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상담소에서는 종전에 지부 관계였던 전국 17개 지역의 기관들과 '전국업무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본소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격차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또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 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비혼모시설(애란한가족네트워크 등), 법률홈닥터 등에서 연계된 피해자의 소송구조사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검찰청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협조를 본소에 요청하고, 본소는 대상자를 상담하고 백인변호사단과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수사 중인 검찰청에서 피해 아동의 친권자 변경 신청을 의뢰하는 등 전국의 각 검찰청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건을 요청하고 있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2023년 소송구조 통계

### 1. 전체 소송구조 건수 및 주요 내용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1,106건으로 2022년 1,003건에 비해 103건이 늘어나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본소가 진행한 것이 456건(41.2%), 전국업무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진행한 것이 650건(58.8%)이었다.

2023년에 진행한 소송구조사건 1,106건 중 가사사건이 965건으로 87.2%를 차지하여 민·형사사건(141건, 12.8%)에 비하여 6배 이상 많았다(이하 표1 참조).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56년 창립 이래 가사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명실상부한 가사전문기관으로서 어려운 가정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가사사건 이외의 민사사건(138건)으로는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사건이 132건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노숙인들의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소송구조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형사사건 3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관련된 폭행, 협박사건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건이었다.

가사사건(965건) 중 이혼 등(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402건, 36.3%)이 가장 많았고, 접근금지,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사전처분<sup>1)</sup> 신청사건(180건, 16.3%),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청구사건 및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및 강제집행 신청사건(132건, 11.9%)이 뒤를 이었다.

주로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미성년후견 사건은 71건(6.4%)이었고, 대부분 이혼 사건에서 보전처분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역시 63건(5.7%)으로 본안사건과 함께 진행되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등을 원하는 양육친권에 관한 사건은 27건

(2.4%),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실제 관계와 달라 진실에 부합하게 정정을 구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사건은 18건(1.6%) 등이었다.

전반적인 소송구조 건수의 증가와 함께 2022년도에 비해 이혼(374건⇒402건), 양육비(107건⇒132건), 미성년후견(53건⇒71건) 사건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1. 2023년 전체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항목	구분	빈도(건)	비율(%)
가사 (965건, 87.2%)	이혼	402	36.3
	사실혼해소	4	0.4
	위자료/재산분할	6	0.5
	양육친권	27	2.4
	양육비	132	11.9
	면접교섭	11	1.0
	성년후견	3	0.3
	미성년후견	71	6.4
	인지	13	1.2
	친생부인	2	0.2
	친생자존부	15	1.4
	입양/친양자입양	1	0.1
	파양	2	0.2
	유언/상속	5	0.5
	혼인무효	2	0.2
	가족관계등록부	18	1.6
가압류/가처분	63	5.7	
사전처분	180	16.3	
가사기타	8	0.7	
민사 (138건, 12.5%)	개인파산/면책	126	11.4
	개인회생	6	0.5
	부동산	0	0.0
	민사기타	6	0.5
형사 (3건, 0.3%)	형사기타	3	0.3
계		1,106	100.0

1)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2. 전체 소송구조 결과

2023년에 진행한 사건 1,106건 중 2023년 12월 말까지 399건(36.1%)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승소율은 97.6%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어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한편 가사사건의 특성상 소송 중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부부간의 화해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조정 및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 제기 후 취하로 종결된 경우가 71건 있었다.

〈표2. 2023년 전체 소송구조 결과〉

구분	빈도(건)	비율(%)	승소율* 97.6(%)		
종결	399	36.1	종결사건 399(건)		
진행중	707	63.9	승소	패소, 각하	기타, 소취하
계	1,106	100.0	320	8	71

\*승소율: 승소/(승소+패소, 각하)(2023. 12. 31. 기준)

## 3. 2023년 본소 소송구조 통계

전체 소송구조사건 중 본소 소송구조사건을 별도로 정리해 보면, 본소 소송구조사건은 456건으로 전국업무협력기관 연계사건이 포함된 전체 소송구조사건에 비하여 양육비, 미성년후견,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본소의 양육비, 미성년후견,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사건을 특화하여 관련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소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를 보면 가사사건이 73.9%(337건), 민사사건이 26.1%(119건)을 차지하였다. 가사사건 중에서는 이혼 24.6%(112건), 양육비 16.2%(74건), 미성년후견 15.3%(70건)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민사사건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이 114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다.

〈표3. 2023년 본소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항목	구분	빈도(건)	비율(%)
가사 (337건, 73.9%)	이혼	112	24.6
	사실혼해소	0	0.0
	위자료/재산분할	0	0.0
	양육친권	11	2.4
	양육비	74	16.2
	면접교섭	4	0.9
	성년후견	1	0.2
	미성년후견	70	15.3
	인지	8	1.7
	친생부인	2	0.4
	친생자존부	13	27.9
	입양/친양자입양	0	0.0
	파양	1	0.2
	유언/상속	3	0.7
	혼인무효	0	0.0
	가족관계등록부	15	3.3
	가압류/가처분	6	1.3
사전처분	14	3.1	
가사기타	3	0.7	
민사 (119건, 26.1%)	개인파산/면책	114	25.0
	개인회생	2	0.4
	부동산	0	0.0
	민사기타	3	0.7
형사 (0건, 0.0%)	형사기타	0	0.0
계		456	125.0

## 4. 2023년 본소 소송구조 결과

2023년에 진행한 사건 456건 중 2023년 12월 말까지

〈표4. 2023년 본소 소송구조 결과〉

구분	빈도(건)	비율(%)	승소율* 97.2(%)		
종결	240	52.6	종결사건 240(건)		
진행중	216	47.4	승소	패소, 각하	기타, 소취하
계	456	100.0	212	6	22

\*승소율: 승소/(승소+패소, 각하)(2023. 12. 31. 기준)

240건(52.6%)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216건(47.4%)는 진행중이다. 승소율은 97.2%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다.

### III. 결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족 복리를 기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구조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면접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사이버, 서신, 화상, 출장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창구를 열어 내담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더 잡은 인지도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1,106건의 소송구조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여 내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구조를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 소송구조 참여 백인변호사단 명단

(직함 생략, 가나다 순)

### 1. 본소 사건

강종협(부천), 고지환(상주), 공영서(수원), 금윤화(서울), 김경수(서울), 김균율(인천), 김다경(서울), 김상균(서울), 김선옥(부산), 김세중(천안), 김소이(서울), 김수진(제주), 김영심(대구), 김정화(인천), 김진아(서울), 김학모(여주), 김형주(부천), 남현우(서산), 문석빈(인천), 문형승(안산), 박다혜(서울), 박미혜(창원), 박성룡(인천), 박성미(군산), 박수열(서울), 박시형(서울), 박은정(서울), 박인욱(창원), 배준영(광주), 백록담(서울), 서지연(서울), 성수민(부산), 신은숙(서울), 심요섭(정읍), 심재범(강릉), 안미연(서울), 안서연(서울), 오현희(서울), 옥치돈(거제), 윤길현(부산), 이동규(서울), 이민하(인천), 이상현(성남), 이새나(안양), 이수연(서울), 이수호(인천), 이승석(인천), 이승익(대구), 이연주(전주), 이영임(서울), 이용락(포항), 이원호(남양주),

이윤선(수원), 이재원(부천), 이창림(울산), 임소진(춘천), 장문수(울산), 장성민(서울), 전혜경(울산), 정경일(해남), 정민영(서울), 정상수(서울), 정지윤(서울), 정진경(안산), 정혜인(서울), 조계창(수원), 조은희(대구), 채인경(안산), 천정환(서울), 최윤환(원주), 최정희(광주), 황미옥(서울), 황민호(서울)

● 위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중에는 본인 소속 관할 사건이 아님에도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지방 법원에 기꺼이 출석하거나 여러 건의 사건을 쾌히 수행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비롯한 본 상담소 소송구조사건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들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본소 소속 변호사 : 김민선, 박슬기

### 2. 전국업무협력기관 사건

강길복(평택), 강종협(서울), 공영서(성남), 구민혜(수원), 권오형(울산), 김경덕(울산), 김균률(인천), 김도형(순천), 김병철(청주), 김소이(서울), 김승구(성남), 김승유(부산), 김승혜(성남), 김유미(인천), 김지은(울산), 김진영(수원), 김창(목포), 김택빈(수원), 김학수(전주), 김현성(청주), 김혜연(청주), 김효정(수원), 류기정(진주), 문대근(성남), 문석빈(인천), 민경식(인천), 민태식(창원), 박인욱(창원), 박재상(청주), 박재성(울산), 박종우(제천), 박진호(인천), 박현수(인천), 박현혜(청주), 방연지(청주), 배우미(인천), 서지연(서울), 손난주(수원), 손명숙(창원), 손수정(성남), 송현승(순천), 신현일(순천), 심요섭(정읍), 여지은(서울), 염영선(창원), 오유경(창원), 이광덕(인천), 이랑(인천), 이수호(인천), 이영임(서울), 이영주(익산), 이원기(수원), 이윤선(성남), 이재영(창원), 이준혁(청주), 이진주(서울), 이창림(울산), 임은지(청주), 임현정(청주), 장경아(서울), 장미애(수원), 장수혁(성남), 장진호(제천), 장진호(창원), 전용우(동해), 전태우(수원), 전혜경(울산), 정경일(해남), 정영근(인천), 조새미(목포), 조혜인(청주), 천정환(서울), 최국신(광주), 최덕문(익산), 최성중(수원), 최용준(전주), 한소영(순천), 한지영(전주), 허정택(성남), 홍정훈(전주), 황인철(제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복미영 상담위원

## 개인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 분석

-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채무에 허덕이는 채무자들 증가
- 신청인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
- 신청인 중 71.6%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 중 88.8%가 월수입 100만 원 미만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채무보증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질병, 실직, 폐업 등의 순
- 파산 및 면책사건 승소율 98.6%에 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소의 신용회복 관련 소송구조는 본소를 방문한 내담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으로부터 연계된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변제하기 어려운 과중한 채무는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으로 인해 예금계좌나 급여가 압류될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해고되거나 고용주와의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신용불량상태에서는 더욱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가정해체에 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소의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소송구조는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로 조속히 복귀하고 인권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 후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다.

파산결정 후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①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②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③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④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의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으로 소멸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권(復權)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 남게 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년 동안 소득의 일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132건의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를 하였는데 이중 116건이 본소에서 진행한 것이고, 16건은 업무협력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소에서 진행한 116건의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sup>1)</sup> 이 중 파산 및 면책사건이 114건, 개인회생사건이 2건이었다<sup>2)</sup>. 이하에서는 상담 내용과 신청서, 법원 결정문 등을 토대로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 상황, 채무 증대 경위 및 지급 불능 경위, 그리고 사건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 1.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

- 남성의 비율이 약 1.2배 더 높아
- 60대, 50대, 70대 순. 10명 중 8명 이상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

#### (1) 성별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69명(59%), 여성이 47명(41%)으로 남성이 18% 더 많았다.

〈표-1 신청인의 성별〉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빈도(명)	47	69	116
비율(%)	41	59	100.0

#### (2) 연령

신청인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61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 24명(20.7%), 70대 12명

#### 1) 〈연도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파산·면책 등 소송구조 본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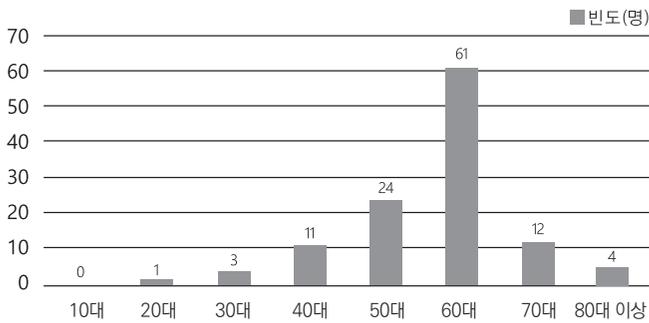
연도	2012	2014	2016	2017	2020	2021	2022	2023
빈도(건)	90	97	149	154	152	125	138	116

#### 2) 〈2023년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분류〉

구분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합계
빈도(명)	114	2	116
비율(%)	98.3	1.7	100.0

(10.3%), 40대 11명(9.5%), 80대 이상 4명(3.4%), 30대 3명(2.6%), 20대 1명(0.9%)<sup>3)</sup>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신청인이 66.3%에 달하여 노년층에서 파산 및 면책 사건 신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인 10명 중 8명 이상(87%)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생애 주기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시기에 빚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50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50대 이상 87.7%, 121명).<sup>4)</sup> 따라서 본소의 파산 및 면책 사건 법률구조 사업은 노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 및 사회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림-1 신청인의 연령〉



〈표-2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1	0.9
30대	3	2.6
40대	11	9.5
50대	24	20.7
60대	61	52.6
70대	12	10.3
80대 이상	4	3.4
합계	116	100.0

### (3) 학력

신청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38명(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25명, 중학

〈표-3 신청인의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무학	3	2.6
초중퇴	2	1.7
초졸	25	21.6
중중퇴	5	4.3
중졸	14	12.1
고중퇴	8	6.9
고졸	38	32.8
대중퇴	3	2.6
전문대졸	2	1.7
대졸이상	16	13.7
합계	116	100

3) 신청인(여성, 20대, 고졸, 월수입 없음)은 전 배우자의 강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운영자는 전 배우자로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덤프트럭 고장으로 수리비가 필요했고, 전 배우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캐피탈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또한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청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금과 지연이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신청인은 2021년경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에 입소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이혼하였다. 이렇게 신청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총 채무는 7,700만 원에 달하였다.

#### 4) 〈2022년 본소 파산면책 등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2	1.4
30대	6	4.3
40대	9	6.6
50대	34	24.6
60대	61	44.3
70대	20	14.5
80대 이상	6	4.3
합계	138	100.0

교 졸업 14명 순이었다. 초대 졸업 이상인 경우가 18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청인이 59명(50.1%)에 달했다.

## 2. 신청인의 생활상황 분석

- 대부분 무직, 그 외 단순노무직 등
-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88.8%, 작년보다 5% 올라
-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상황

### (1) 직업

신청인 대부분은 신청 당시 무직(99명, 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중 일용직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6.9%였다. 소송구조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채무로 인해 적절한 일터를 찾기 어려웠고, 신청인이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이 있더라도 채무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4 신청인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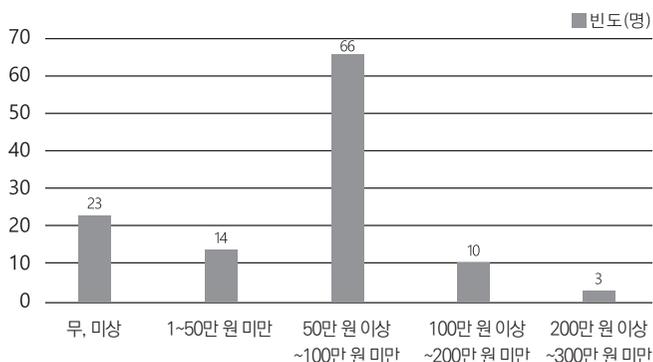
직업	빈도(명)	비율(%)
주부	3	2.6
회사원	3	2.6
일용직	1	0.9
단순노무	7	6.0
무직	99	85.3
자영업	3	2.6
합계	116	100.0

### (2) 월수입

신청인의 월수입을 보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66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소득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37(31.9%)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103명(88.8%)에 달하여, 신청인 대부분이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명(2.6%)이 있었다.<sup>5)</sup>

〈그림-2 신청인의 월수입〉



〈표-5 신청인의 월수입〉

월수입	빈도(명)	비율(%)
무, 미상	23	19.8
1~50만 원 미만	14	12.1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66	56.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0	8.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	2.6
합계	116	100.0

### (3) 주거형태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신청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91명, 78.4%)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친족 이외 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9명, 7.8%)하는 경우나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7명, 6.0%)하는 경우와 쉼터(5명, 4.3%)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5) ① 남성(80대, 대출), 급여소득자,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13,184,033,302원, 채무증대경위: 사업의 경영파탄

② 남성(50대, 고졸), 건설직 근로자,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59,499,878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③ 남성(50대, 중졸), 공공일자리 계약근로자,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51,206,492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표-6 신청인의 주거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91	78.4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7	6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9	7.8
셋터 거주	5	4.3
신청인 소유 주택	1 <sup>6)</sup>	0.9
기타	3	2.6
합계	116	100.0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91명의 신청인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보면, 임차보증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48명(52.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명(20%) 등으로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임대주택 보증금	빈도(명)	비율(%)
없음	8	9
100만 원 미만	10	11.0
100만 이상 ~ 300만 원 미만	21	23.1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4	15.3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3	14.2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13	14.2
2,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6	6.6
5,000만 원 이상	6	6.6
합계	91	100.0

#### (4) 신청인의 과거 경력

신청인의 과거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을 보면,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 33명(28.4%)으로 공동 1순위였다. 또한 일용직 24명(20.7%), 단순노무직 16명(13.8%)으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신용불량은 특정 직업이나

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표-8 신청인의 과거 경력〉

직업	빈도(명)	비율(%)
회사원	33	28.4
자영업	33	28.4
일용직	24	20.7
단순노무	16	13.8
무직	5	4.3
주부	2	1.7
교육직	1	0.9
종교인	1	0.9
공공근로	1	0.9
합계	116	100.0

### 3.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분석

- 신청인 116명의 총 채무액은 345억 원,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270만 원, 최고 채무액은 131억 원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채무보증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입원, 실직, 폐업 등의 순

#### 가. 채무액 분석

(1) 신청인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32명(27.5%)으로 가장 높았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1명(26.6%),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7명(14.6%),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4명(12.1%) 순이었다. 또한 채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명(2.6%)이 있었다.<sup>7)</sup> 그리고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11명(9.6%)이 있었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해 5%p 증가한 것이다. 채무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건강상태, 현재 상황, 채무 상환 가능성, 근로능력 등을 고

6) 여성(60대, 고졸), 무직, 월수입 없음, 채무액: 699,725,474원, 채무증대경위: 사업의 경영파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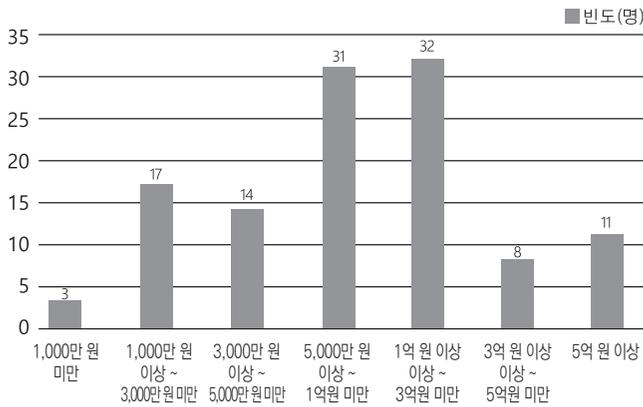
7) ① 남성(80대, 고졸), 무직, 월수입 50~100만 원 미만(연금소득과 친족지원), 채무액: 2,697,639원, 채무증대경위: 상속채무

② 남성(70대, 중졸), 무직, 월수입 1~50만 원 미만(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9,748,101원, 채무증대경위: 구상금

③ 남성(60대, 초졸), 자활근로, 월수입 50~100만 원 미만(근로소득), 채무액: 6,946,130원, 채무증대경위: 명의도용

려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3 신청인의 채무액〉



〈표-9 신청인의 채무액〉

채무액	빈도(명)	비율(%)
1,000만 원 미만	3	2.6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17	14.6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4	12.1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1	26.6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2	27.5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8	7.0
5억 원 이상	11	9.6
합계	116	100.0

(2)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20명의 신청인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9명(45.0%), 70대 4명(20%), 80대와 50대 각각 3명(15%)으로 소액의 채무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령자일수록 높았다.

〈표-10 채무 3,000만 원 미만의 신청인〉

(단위 : 명)

연령	성별		합계 (비율 %)
	남성	여성	
20대	0	0	0
30대	0	1	1(5.0)
40대	0	0	0
50대	2	1	3(15.0)
60대	5	4	9(45.0)
70대	3	1	4(20.0)
80대 이상	1	2	3(15.0)
합계(비율 %)	11(55.0)	9(45.0)	20(100.0)

- 채무액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사례

사례 1. (남성, 60대)

신청인은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를 하였으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을 그만 두었다.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료를 위해 침술원과 병원을 다녔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지인에게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하면서 채무가 증대하였고, 건강은 더욱 나빠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사례 2. (여성, 60대)

신청인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일급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배우자도 근무하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건강이 나빠져 오랫동안 일을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배우자 또한 부족한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신청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실직하였고, 이후 신청인 부부는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사례 3. (남성, 60대)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자재 대금과 임금 및 연장구입을 위해 금융대출과 사채를 빌렸으나 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어 결국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례 4. (남성, 70대)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했으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돌려막기'를 하며 지내다 보니 채무가 증대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70대 후반의 나이와 건강 문제로 어떠한 소득활동도 할 수 없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수입의 전부인 상태가 되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사례 5. (여성, 80대)**

사업을 하던 신청인의 동생이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한 동안 동생은 카드대금 연체 없이 잘 변제하였으나, 동생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고,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인은 지금까지 검소한 생활로 채무 없이 생활하였으나 동생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3) 신청인 116명의 총 채무액은 34,519,143,052원에 달하였다. 최저 채무액은 2,697,639원이었고, 최고 채무액은 13,184,033,302원이었다.<sup>8)</sup>

〈표-11 평균 채무액 및 평균 채권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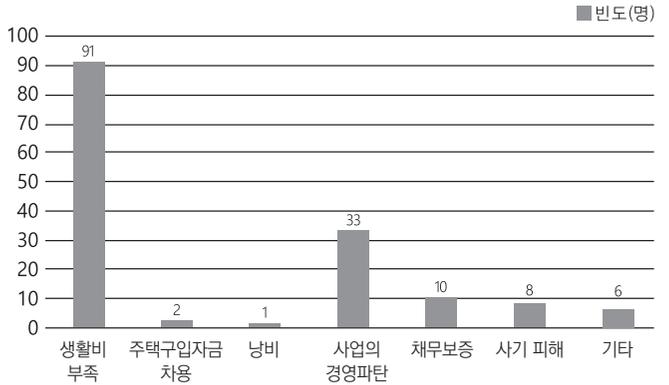
채무 총액	34,519,143,052원
최고 채무액	13,184,033,302원
최저 채무액	2,697,639원
최다 채권자 수	17명
1인당 평균 채무액	300,166,461원
평균 채권자 수	5명

**나. 채무증대경위 분석**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이유인 채무증대경위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채무는 다양한 사유로 증대될 수 있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

위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림-4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표-12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채무증대경위	빈도(명)	비율(%)
생활비부족	91	60.3
주택구입자금 차용	2	1.3
낭비	1	0.7
사업의 경영파탄	33	21.9
채무보증	10	6.5
사기 피해	8	5.3
기타	6	4.0
합계	151	100.0

**(1) 생활비 부족**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91명, 60.3%). 상담내용에서 채무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 즉 소위 카드돌려막기로 인해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2) 사업의 경영파탄**

두 번째로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사업의 경영파탄으로 인한 경우였다(33명, 21.9%).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되는 채무의 경우 통상 그 채무액이 큰 경우가 많아 신

8) 신청인(남성, 80대, 대졸,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였고,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청인이 대표 이사로서 보증을 섰다.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신청인의 자녀들까지 채무를 부담하며 회사를 유지하였으나, 결국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자녀들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신청인도 2023년경 신청하여 같은 해 7월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신청 당시 신청인의 채무액은 131억 원에 달했다.

청인들이 변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채무보증

세 번째 사유는 타인의 채무 보증을 썼다가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면서, 신청인의 채무가 증대한 경우로 6.5%(10명)에 달하였다.

### (4) 사기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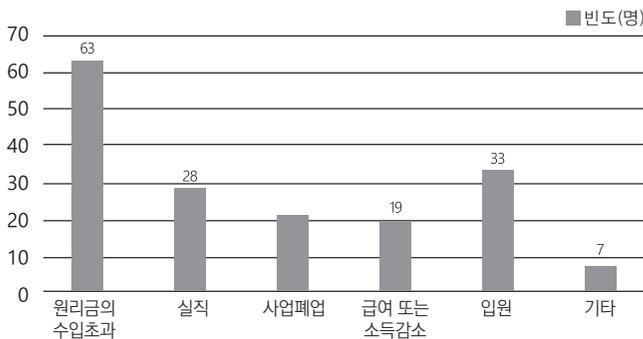
네 번째 사유는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8명, 5.3%). 사기 피해의 경우, 신청인들이 주변의 권유나 기망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된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몇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고 빚을 지게 된 경우처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주고 신청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된 피해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포차, 대포폰 등을 구입하여 범죄 등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 지급불능경위 분석

지급불능경위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

〈그림-5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 9) 〈2022년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74	35.6
실직	46	22.1
사업폐업	41	19.7
급여 또는 소득감소	18	8.6
입원	23	11.1
기타	6	2.9
합계	208	100.0

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이다.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불능경위 또한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며,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표-13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63	36.8
실직	28	16.4
사업폐업	21	12.3
급여 또는 소득감소	19	11.1
입원	33	19.3
기타	7	4.1
합계	171	100.0

#### (1) 원리금의 수입초과

신청인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63명, 36.8%)로 작년과 동일하였다.<sup>9)</sup> 원금의 상환과 늘어나는 이자를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채무자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1금융권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율의 이자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대환대출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피해로 원리금이 증대함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 (2) 입원

지급불능경위 중 두 번째는 입원(33명, 19.3%)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채무와 가족 간 불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이나 부상 및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3) 실직

지급불능경위 중 세 번째는 실직(28명, 16.4%)이었다.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짐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난으로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 (4) 사업폐업

지급불능경위 중 네 번째는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21명, 12.3%)였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4. 사건결과 분석

본소가 2023년도 진행한 사건(116건) 중 69건(59.5%)이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사건은 47건(40.5%)이다. 종결된 사건은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승소율은 98.6%였다.

〈표-14 사건결과〉

	빈도(건)	비율(%)	승소율 98.6**		
종결	71	61.2	종결사건 71(건)		
진행중	45	38.8	승소	기각	취하
계	116	100.0	70	0	1

\*\* 승소율 : (승소)/(승소+취하+기각)

##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소에 파산 및 면책 법률구

조를 신청한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과 사업의 경영파탄을 이유로 채무를 지기 시작한다. 또한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 실직, 또는 폐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청인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경제적 안정이 절실한 계층에서의 파산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전환된다. 또한 신청인 중 2/3에 해당하는 83명(71.6%)이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신청인 중 103명(88.8%)이 부양가족 수 대비 법정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금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이었다.

그리고 신청인 중 85.3%가 현재 무직인 상태인 점과 신청인 중 72.6%가 임대주택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의 본인 혹은 타인 명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피치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하는데 꼭 필요한 신용회복제도이다. 한편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비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각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인권 보호와 가정의 회복 그리고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해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규선 상담위원

10) 2023년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되었다.

2023년 파산면책 소요기간

① 최단기간: 1개월(남성, 60대, 초졸, 월수입 7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46,029,895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② 최장기간: 8개월(여성, 60대, 초졸, 월수입 없음, 채무액 21,758,010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I)

### I. 동지교실 개관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8년 8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2월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 6월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23년 12월까지 행위자 3,670명의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중 ‘동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동지교실’이라는 강좌명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동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동지교실은 200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1회씩, 219회 실시되었으며, 사회복지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가족문제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다. 강좌 개설 초기에는 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행위자 및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강좌를 확대하였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등지교실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자신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등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통해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내용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강좌 내용 중,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교수가 강의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선별하여 정리 및 구성한 것이다.

## II. 등지교실 내용 소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등지교실 강좌는 (1)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폭력, 폭력 발생의 메커니즘, 가정폭력 가해남성의 특성,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 등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 (2) 성장기 폭력적인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정폭력의 대물림, 폭력가정 자녀의 특성,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 모색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및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 (3) 배우자 이해하기,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행복하고 평등한 결혼생활의 특성, 갈등해결 방안 모색 등 바람직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탐색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비폭력대화’, 2010년에는 ‘부모교육’, 2011년에는 ‘가족의 입체적인 의미’, 2012년에는 ‘비폭력대화’, 2013년에는 ‘부모교육’, 2014년에는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 및 ‘에니어그램을 통한 인간관계의 이해’, 2015년에는 ‘비폭력대화 및 분노조절 기법 이해 및 실천’, 2016년에는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 2017년에는 ‘부부 및 자녀와의 비폭력대화법’, 2018년과 2019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 교육강좌’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에서 이를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소주제로 강좌를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1)

2007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상담소의 역사는 우리 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역사인 동시에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창립 이후 법률구조 사업을 중심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교육,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와 출판·홍보 그리고 끊임없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도 호주제 폐지라는 커다란 과업을 이룬 상담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립 반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50주년은 상담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과 양성평등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담소는 지나온 역사를 발판으로 더욱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회관의 건축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소의 역사를 길이 보존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를 보완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가칭)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가칭)를 발간하는 동시에 상담소 기록영화를 새로이 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담소 역사의 가장 커다란 과업이 될 새로운 회관 건축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 왜 새로운 회관을 지었는가

1976년 완공된 여성백인회관은 그 후 30여 년 동안 법률구조 사업의 본산으로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을 비롯해 가정문제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출판·홍보 사업의 요람으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 왔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결혼식도 치를 수 없었던 가난한 부부의 결혼식장이 되었고, 독재정권 아래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백인회관을 지을 당시의 상황은 근근이 최저의 건축비를 마련할 정도여서 일단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기초와 건축자재 등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속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여성백인회관은 30여 년 이상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더 이상 ‘집’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야 말았으며, 이는 건축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노후된 보일러에서는 물이 새기 일쑤여서 종종 컴퓨터나 귀중한 서류 등이 물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고, 전기의 과부하가 우려되어 냉방시설을 할 수 없어 찻통인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맞아야 했다. 직원들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이 추위와 더위까지 심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하게 겪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때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내담자들은 ‘저는 돌아가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근무 하시는가’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침수지역인 이곳이 지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건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르자 이사회는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건물이 워낙 낡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수비용이 재건축 비용에 버금갈뿐더러 주차시설이 없고 기초가 부실하여 건물이 제구실하기가 힘들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차라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률구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왜 그리 변대한 건물을 필요로 하는가, 혹은 굳이 좋은 건물에 안락한 상담실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담소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소는 사회의 자산이다.’ 이는 상담소가 상담소의 임직원은 물론 회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내담자들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다.

상담소의 회관 건축은 민간 법률구조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다. 그저 돈 들여 건물을 하나 세우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취약한 우리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회의 기둥이 되는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인 것이다. 상담소의 법률구조 활동은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눔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상담실을 내담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상담소는 판단했다. 고단한 현실의 해답을 찾아 어려운 걸음을 한 내담자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집부



## 부부 모두 자기중심적 경향으로 잦은 충돌, 부모의 입장 자각하고 더디지만 서로 공감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

2021버8\*\*폭행 / 2021버8\*\*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4회, 자조모임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 부부 교육강좌(비대면 실시) 1회
- 부부상담 8회 등 18회

### 상담기간

2021. 6. 25. ~ 2022. 1. 12.

### 상담경과

부부는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지 18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19세, 17세)이 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퇴직하였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충돌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일을 반복해 왔다. 2020년 12월 사건당일에도 남편은 아내와 시비하다가 아내의 안면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찰과상을 입히고 연이어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아내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몸을 수차 할퀴고, 폭행하는 등 목, 가슴, 복부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

다. 이와 같이 상호 간 폭력을 행사한 부부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 위탁되었다.

갈등요인으로 아내는 성격차이, 남편의 경제적 통제 및 음주문제, 명령, 구속 등을 꼽았고, 남편은 성격차이, 자녀문제, 생활비 문제, 청소 및 설거지 문제 등을 꼽았다. 부부는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강하였고 상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다.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 하지 않기,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공감·수용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노력하였다. 두 사람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갈등과 충돌이 재발하였다. 부부는 부모 역할에 대한 생각도 점검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점검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큰아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 아들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하여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냈다. 그러나 아들은 재수를 하기로 하였고 부모 불화에 기인한 불안감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부부는 아들의 요청대로 노력하였으며 이전보다 소통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부부는 상담 초기에는 부부관계만족도를 0점으로 상담 종결시에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각 평가하였다. 부부에게 존중 대화 실천 및 상대방 관점에서의 전환과 행동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21버3\*\*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자조모임 2회  
부부상담 2회 등 14회

### 상담기간

2021. 7. 9. ~ 2022. 1. 13.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8년이 경과하였고, 부부사이엔 1녀(6세)가 있다. 몽골 국적의 피해자는 결혼 전 한국에 왔을 때 행위자를 소개받았는데 행위자가 몽골에 두 번이나 가서 교제를 이어가다 결혼에 이르렀다.

행위자는 2021년 1월 사건당일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신발장 위에 있던 소화기와 물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부부는 이전에도 싸운 적이 많았고 경찰 신고는 두 번째이며 보호처분은 처음이었다.

행위자는 법원 결정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담에 임하지 않아 상담자가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발송하여 상담이행을 촉구한 후에야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행위자는 초상담에서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싸운 일은 많지만 폭력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본건에서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갔기에 소화기와 물총을 던진 것이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일상사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부부문제에 국가에서 개입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며 이후에는 상담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며칠 후 행위자는 스스로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 수준에 대하여 욕도 신체적 폭력도 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높인 정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행위자가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싫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제삼으면 크게 다투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살았는데 화목한 가정이 늘 그리웠으며 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며, 행위자도 부모가 화목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같은 욕구가 있었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 및 대화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가졌다. 부부가 폭력대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상담을 받으며 비폭력대화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행위자는 법원 결정 후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점도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잘 이행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습득하여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음식을 하며 육아에 협조하는 등 노력하였음을 인정하고, 행위자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점을 평가하였다. 다만 행위자에게 공격적인 면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발전시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화를 잘 풀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부부는 사건당시와 종결상담시 모두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였다. 보완점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위자가 감정 조절하기를, 행위자는 피해자가 한국 음식을 조금 더 잘하기를 바랐다. 지금처럼 상담 종결 이후에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20버2\*\*\*상습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오빠)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6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등 18회

### 상담기간

2021. 8. 2. ~ 2022. 1. 26.

### 상담경과

행위자는 혼자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2018년 2월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이혼후 혼자 된 피해자(여동생)와 살고 있었는데 행위자도 같이 살게 된 것이다. 행위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많아졌고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변제 독촉을 위해 집에까지 찾아왔던 일도 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매도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사건당일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 있던 행위자는 부동산업자와 도배업자가 느닷없이 집에 와서 방 면

적을 측량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시비 끝에 칼과 주먹을 들이대 상습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이후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져 어머니 집에서 나왔고, 어머니가 집을 매도한 돈 중 일부를 주어 채무변제 후 남은 돈으로 옥탑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며 주민센터의 긴급지원도 받고 있었다.

행위자는 이번 기회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자신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였다. 또 자신의 행동을 가족간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갈등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상담을 통하여 그것이 심각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 관리를 우선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지내기를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 2024년 1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1/4	10명	자기돌봄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8	13명	과정집단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동지교실	1/10	50명	피할 수 없으면 받아라 : Stress를 Strength로① (+수용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집단상담	1/10	10명	고부갈등, 남편의 중간역할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1/17	8명	자녀관계, 안 싸우는게 좋은 부모	
		1/24	11명	부부화목의 비결, 시간과 경험의 공유	
1/31	10명	내가 얻어가는 것과 배운 것			

# 어떻게 할까요?



## 이 혼 25

### ●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문 104 | 저희 부부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남편은 혼자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 법원에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법원에서는 저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여 제가 이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후 미국 법원에서는 이혼을 명하는 취지의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받은 이혼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것인가요?

**A**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

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호보증에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따라서 귀하의 주소가 국내에 있고, 귀하가 미국에서의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미국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남편이 이미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Q** 문 105 | 저는 남편의 외도로 7년 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어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혼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



지 않는 창설적 신고이나, 재판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때의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동법 제121조, 제122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얼마 전 고모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경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위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께서 생전에 혼인신고 한 외국인과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외국인을 찾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나 영문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는 위 외국인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절차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일 때입니다(민법 제815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외국에서 외국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한 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혼인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두절한 점, 피고가 가출 당시 한국에 취업을 위해 원고와 혼인했으며 원고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속마음을 밝힌 점, 피고의 사촌도 피고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원고와 혼인 후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위 외국인을 상대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주장 및 입증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슬기 변호사

##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감독 김세인

출연 양말복, 임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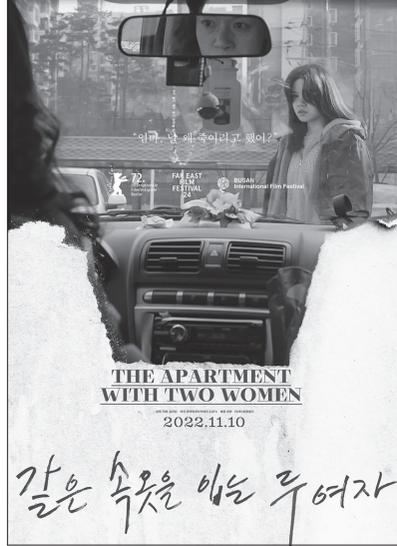


모녀인 수경(양말복)과 이정(임지호)은 사이가 좋지 않다. 마트 주차장에서 여느 때처럼 손찌검을 동반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간다. 수경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차가 이정을 뺐친다. 수경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정은 평소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마가 고의로 자신을 친 것이라 의심한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제목부터 뻔뻔하고 노골적이다. 아무런 정보 없이 제목만 봤을 때에는 성적인 함의가 강하게 느껴졌지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곧장 등장하는 ‘속옷의 이동’ 장면은 범상한 추측을 아무렇지 않게 걷어찬다. 이정은 세면대에서 팬티들을 빨고 있다. 바로 옆 번기에 앉아 용변을 본 수경은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 이정에게 떠맡기고 대신 빨고 있던 속옷을 달라며 손을 내민다. 축

축한 팬티를 입은 채 수경은 그대로 외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쪽좌훈방에 들어가자마자 난로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말린다. 세면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이정은 자신의 팬티에 생리혈이 묻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 손빨래를 시작한다. 모녀 사이에 대화는 한 마디도 오가지 않고, 대신 속옷을 통한 서로의 체액과 분비물이 교환될 뿐이다. 일상에서도 더럽고 비천하게 여겨지기 일쑤인 것, 하물며 영화 같은 대중 시각 매체에서 ‘굳이’ 등장시키지 않는 현실의 남루한 조각 같은 것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오프닝에서부터 선언처럼 제시된다.

적대적인 두 모녀의 ‘교환’은 이를테면 중년 여성과 20대 딸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교환’하는 것이기도 하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로 추정되는 수경은 다른 엄마들과 많이 다르다. 와인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화려한 호피 무늬 속옷을 입으며(무려 5종 세트가 29만 원 짜리다. “이젠 기능보다 디자인이야.”), 지금도 못 남성들의 흘끔거리는 시선을 받는다. 상냥한 남자 종업과 재혼을 앞둔 수경은 여성성을 과시하며, 딸과 엄마가 한 세트에 취급당하는 시선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딸 이정은 정반대다. 학습 교재 출판사 경리부에서 일하는 이정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개인 사진이 한 장도 없다. 죄다 회사 교재들 사진뿐이다. 흔히 말하는 20대 여성의 ‘발랄한’ 일상은 이정과 아무 상관도 없다. 친구도, 애인도 없는 이정은 엄마의 관심을 갈구한다. 수경은 딸에게 “너만 없었으면 나는 훨씬 잘 살았어”라고 서슴없이 내뱉고, 이정은 “내가 이



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라고 악을 쓴다.

한국 사회에서의 모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제시된 적이 없다. 대중문화 속 엄마는 모성을 빼고 나면 아무런 이야깃거리가 없는 것처럼 다뤄졌다. 엄마는 공포영화에 나와도, 스릴러영화에 나와도, 멜로드라마에 나와도, 대하드라마 사극에 나와도 언제나 자식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었다. 자신의 몸속에서 10개월가량 키워내면서 땀줄과 양수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던 자식에 대한 애착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려져서, 현실 속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도 동일한 조건이 상수처럼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다시피 해 왔다.

영화는 수경과 이정의 시점을 오가며 서로를 괴물처럼 응시하는 모녀를 들여다본다. 처음에는 그악스러운 ‘패륜’처럼 제시되던 상황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을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와 고정관념에 맞춰 일그러져 왔음을 떠올리게 된다. 조그맣고 빼빼 마른 수경은 젊은 싱글맘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며 두 사람 어치의 삶을 꾸려왔고, 썩좌 훈방에 몰려들어 썩을 태우면서 남편 욕, 시부모 욕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개운하게 나가는 동네 여자들의 그 스트레스가 공해처럼 쌓여서 자신을 갉아먹었다고 느낀다. 그는 그 분노를 어린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풀었다. 세상의 전부를 엄마와 동일시하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분노와 좌절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어차피 태어난 거 악착같이 살아남아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늘 생각하지만 실상은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관심을 갈구하며 엄마 때문에 망가진 삶을 엄마에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정은, 비틀린 애착에서 벗어

나기 위해 자신이 더 큰 상처를 견뎌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 김세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이 모녀의 파국을 칼날같이 지독하게 파헤치며, 가족으로 묶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개별적인 인간일 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사납게 들이댄다. 무시무시한 데뷔작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동계방학을 맞아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하여 신는다.

### 김 동 준

동국대학교 법학과

저는 실습을 오기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잘 알지 못했고, 가사사건에 관련해서도 무지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사건은 언젠가는 분명히 내게도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령 증여, 상속 등의 일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직면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담을 참관하며 배우며 느낀 점은 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법률구조 등의 업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학습하면서 가사사건은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논문들과 <어떻게 할까요> 상담사례집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원상담과 상담소 상담을 참관하면서 처음에는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요지인지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 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담소 업무를 하면서 맡았던 일들에 관한 상담을 참관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한 달간 현장실습 연수를 하면서 확실히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져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박 서 인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교에서 법학이론을 배우지만, 실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배우고 경험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 업무를 처음 연수할 때는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컸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실습생 친구들과 이야

### 노 태 연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과에서 2년 동안 재학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법을 공부했지만 실제 사례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법 가운데 이혼은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현장실습을 지원했습니다.

상담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실제 사례에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서 그동안 배웠던 공부와 경험을 토대로 가족법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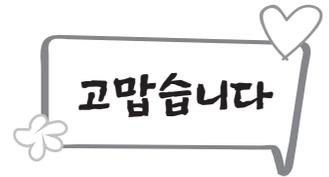
상담소에서 있는 동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내담자의 대부분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매우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법조인이 된다면 그때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자신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조 윤 이**

동국대학교 법학과

상담소에 연수를 오기 전 설레기도 하였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껏 이론적인 지식만 쌓았는데 실무에 이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너무 긴장한 탓에 하루 종일 얼어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모든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뜻깊게 느껴졌기 때문에 매 순간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부 업무, 도서실 업무, 기타 업무, 전화 상담 연수 모두 보람 있는 업무였지만 특히 전화 상담 연수에서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와 연습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이혼, 양육비, 가정폭력 등의 가정 법률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법원 내 종합민원실에서의 법률 상담 참관을 통해 일반인들이 겪는 법률문제에 의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듣고 공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례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저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법률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싶다는 목

표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좋은 연수 동기생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며 일할 수 있었으며 아침조회 시간, 피드백 시간 그 외에도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저의 목표를 잊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1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성은, 고세현, 박민제, 최문경, 한아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이현혜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 불안의 서

페르난두 페소아

배수아 옮김

봄날의 책, 2023(초판 23쇄)



서문을 읽고 본문을 시작할 때, ‘사실 없는 자 서전’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12의 일부가 발문으로 적혀 있었다.

“... 나는 사실 없는 내 자서전, 삶 없는 내 인생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 내가 고백 속에서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건 털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구절에 깊이 매혹당했고, 올해 내내 두고 읽을 책으로 이 책 『불안의 서』를 택했다. 오래전부터 이 책을 권해 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이 책은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책이 아니라 곁에 두고 틈틈이 481편의 글 한 편 한 편을 읽어가야 할 것이다.

책을 쓴 페소아는 1888년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 때 가족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으로 이주했는데 1905년에 홀로 돌아와 리스본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나 곧 학업을 중단하고 영어 무역 서신을 번역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1912년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1915년 포르투갈 모더니즘 문학의 시초라 평가받는 잡지 『오르페우』를 창간했다. 일생 여러 잡지와 신문을 통해 130여 편의 산문과 300여 편의 시를 발표했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몇 권의 영어 시집을 펴냈다. 1934년 생전에 출간된 저서 중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로 쓴 시집 『메시지』를 출간했다. 틈틈이 기록해 놓은 단상들을 모아 『불안의 서』를 출간하려 했으나 간질환의 악화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35년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후 엄청난 양의 글이 담긴 트렁크가 발견되었고, 아직도 분류와 출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페소아의 삶에서 글의 잔상이 느껴져서 그 삶을 먼저 써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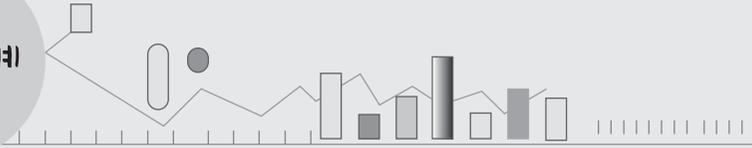
『불안의 서』는 짧으면 원고지 2~3매, 길면 20매 분량의 에세이 481여 편으로 이루어졌다. 저자 페소아의 다른 이름 즉 헤테로님(Heteronym, 異名) 베르나르두 소아레스가 포르투갈의 리스본 특히 도라도레스를 중심으로 그곳의 사람들과 풍경 등을 그리며 그 안에서 어둠과 모호함, 침묵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글들은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인간, 삶과 죽음, 내면의 심리와 외부 세계 등과 같은 근원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인생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는 1930년 4월 14일, 73편에서 소아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산 위에서 빛나는 태양은 그 빛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보다 계곡에 있는 이에 게 더욱더 찬란한 광채가 되고 숲속에 우뚝 솟은 성은 그 안에 갇힌 채 성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계곡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그에게 더욱 아름답다고, 그래서 “삶은 나를 위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와 영혼의 방랑자인 내가 도심 저지대의 거리를 지나 테주 강변으로 걸어가갈 때, 은유와 상징이 현실에 섞여 들어간다. 이미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은 마지막 태양빛 속에서 수많은 겹의 영롱한 햇살을 등진 리스본의 언덕들이, 낯선 명예처럼 빛나는 후광을 이고 있다.”

퇴근길 노을이 가득한 하늘을 옆에 두고 북악산길을 내려가며 이 내용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벅차게 슬프고 기뻛다.

소설가인 배수아 작가의 번역도 좋다.

이숙현 편집부장



## 본소, 대검찰청과 맺은 공익소송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일차 전국적으로 6건의 법률지원 협조 요청 받아

2023년 12월 1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검찰청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협조를 본소에 요청하도록 되었는데, 이미 6건의 사건이 본소에 접수되었다. 본소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서류안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상담소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대전지검 흥성지청-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 변경 신청
2. 서울동부지검- 가족에 의해 유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
3. 서울중앙지검- 유기된 아동에 대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
4. 의정부지검-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친양자입양청구
5. 수원지검 안산지청-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고 직권출생신고도 안되는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6. 대구지검- 아동매매사건의 피해 아동들의 출생신고 및 입양

## 상담소, 업무표장 등록 존속 기간 갱신 등록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법률상담소' 2002년 출원, 2004년 등록, 2013년 갱신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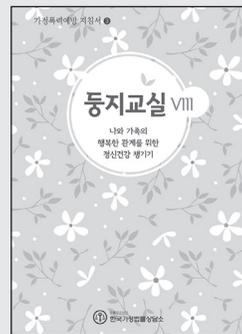
상담소는 1988년 7월 22일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 1이 기재된 법률구조법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또한 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성과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의 명칭인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법률상담소'의 로고를 포함,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하여 결정되었으며, 10년마다 존속 기간을 갱신하여 등록하고 있다.

업무표장권자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며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25건의 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에 관해 업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VIII 「동지교실 VIII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발간



가정폭력예방지침서 「동지교실 VIII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가 새롭게 발간되었다.

본소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한 전국 각 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8년부터 행위자 수탁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02년부터는 매월 1회 '동지교실'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2월까지 총 231회의 교육강좌를 진행하였다. '동

지교실'이라는 강좌 이름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둥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본 지침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된 교육강좌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는데,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원하는 내담자와 현장의 상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지침서는 업무협력기관 등 전국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고, 향후 내담자 및 행위자에게 교육자료로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진행

본소 교육부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률, 폭력에 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용회복제도,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교육현장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강생들은 가정 관련하여 법적 전문 지식을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연수과정이 가정과 학교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본소 교원직무연수를 주변 선생님들과 교육기관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연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관련사진 2면)

###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방학 실무수습 실시

본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수습을 실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2월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방학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가족법에 대한 이해, 법률구조 서류 검토 및 작성 실습, 사이버 상담 실습, 변호사 업무 실습, 상담 참관(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참관 등을 하였다. 이번 실습에는 모두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홍가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예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최보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남주 / 이재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려은  
(관련사진 2면)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 겨울방학대학생 현장실습

2024.1.2.-2024.2.28.(이화여대)

- 장다원, 최서연

2024.1.2.-2024.2.28.(서울대)

- 서동석

2024.1.2.-2024.1.29.(동국대)

- 김동준, 노태연, 박서인, 조윤이

2024.1.31.-2024.2.29.(동국대)

- 김민서, 이정무, 최서원, 최희준

####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소송법개정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6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주관하는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11일/18일/25일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7일에는 본소의 교원직무연수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22일부터 2월2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지도하였다.

### 곽배희 소장, SBS 방송 '과몰입 인생사' 인터뷰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1월 5일 상담소에서 SBS 방송 '과몰입 인생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다. 역사적 인물의 선택을 통해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 토크쇼인 '과몰입 인생사' 한 편에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 이와 관련해 이태영 선생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이자 상담소의 뜻을 잇고 있는 후배로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다.



## 2024년 1월 상담통계

<b>총 건수 4,865</b>		
<b>법률상담 (4,266)</b>		
면접	전화	인터넷
1,060	3,121	85
<b>화해조정</b>	<b>소장 등 서류작성</b>	<b>소송구조</b>
479	40	80

• 인터넷 정보 이용 122,694 건

2024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865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2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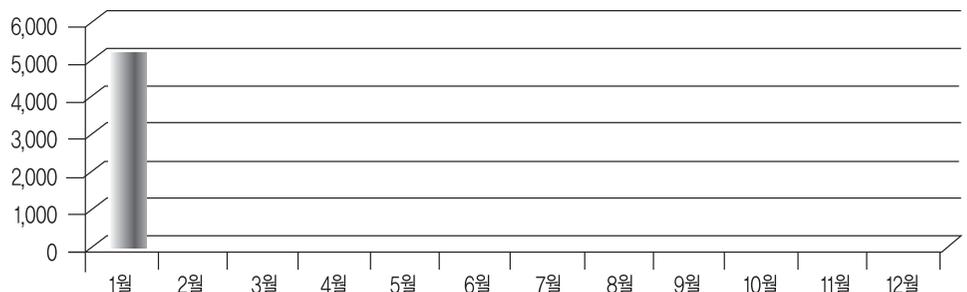
(87.7%), 화해조정 479건(9.8%), 소장 등 서류작성 40건(0.8%), 소송구조 80건(1.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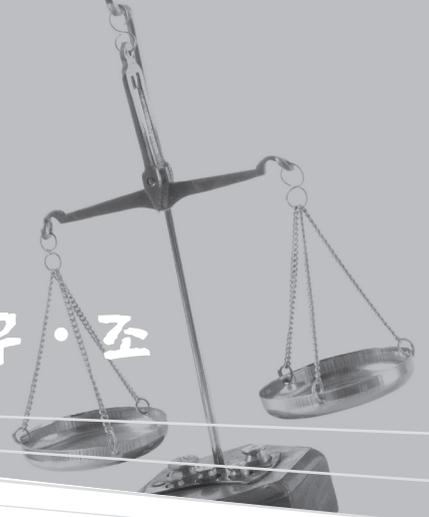
법률상담 4,26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에 비해 친권·양육권(4.1%→4.3%), 면접교섭권(1.3%→2.0%), 인지(1.0%→1.3%), 친생부인(0.7%→1.0%), 친생자존부(1.2%→1.9%), 입양(1.0%→1.2%), 파혼(0.2%→0.4%), 혼인무효·취소(0.3%→0.6%), 이혼무효·취소(0.1%→0.2%), 부양(0.9%→1.7%), 유언·상속(6.5%→6.9%), 가족관계등록부

(2.3%→3.2%), 파양(0.2%→0.4%), 미성년후견(0.7%→1.0%), 성년후견(2.5%→2.6%), 가사기타(16.3%→20.2%), 임대차(0.2%→0.3%), 채권·채무(0.3%→0.5%), 개인회생(0.3%→0.4%), 민사기타(0.6%→1.1%), 성폭력(0.0%→0.1%), 형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26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60건(24.8%), 전화상담 3,121건(73.2%), 인터넷상담 85건(2.0%)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가출 후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아내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결정

법률구조 2023-1-356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남, 20대)와 피고(여, 20대)는 201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1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2가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건본인2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더니 2021년경 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사건본인1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였는데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사건본인1을 만나러 오거나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였다. 이때 사건본인2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건본인2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 처가에 확인한 결과 피고가 가출 후 상간남과 동거하였고,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2. 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사건본

인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로 2023. 12. 1.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조정

법률구조 2023-1-231

담당 : 김수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20대)는 2022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원고의 직장에 남성 직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직을 강요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남성 직원이 한 명 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퇴근을 하면 매일 원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통장내역, 연락처, SNS 메시지까지 확인하였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 말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피고의 폭력적 성향은 심화되어 부모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출산 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사건본인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3개월의 시설 생활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의처증 증세가 계속되어 가정폭력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제주지방법원 2023. 10.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00만 원은 2023. 11. 30.까지, 300만 원은 2023. 12. 31.까지, 나머지 400만 원은 2024. 1.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과거양육비 245만 원은 2023. 12. 31.까지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중 2시간 정도

2) 면접교섭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면접교섭을 한다.

다.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추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피해자보호명령결정에 대한 연장 결정

**법률구조 2023-1-72**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보호명령집행감독**

**내용** : 피해자들(여, 50대, 20대), (남, 30대)은 행위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행위자는 2022년경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살해 위협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들은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에 즉각적인 보호와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가정법원 2023 처000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3. 12. 19.까지 6개월간의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료일 전에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개월간의 연장결정이 있었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12. 15.)

행위자에 대하여 2023. 12.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서울가정법원 2023처000)를 2024. 2. 19.까지 연장한다.

###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3-2-472**

**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3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와 사건본인인 자녀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2014년 9월경 피고는 부부관계를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목

을 조르려고 몸을 압박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2016년 3월경 자녀가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021년 4월경 일정한 직업 없이 1년간 휴직상태이던 피고는 생활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식칼을 이용하여 원고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2021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와 처가에 불만을 표하며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2022년 10월경 피고는 자녀를 혼계한다는 명목으로 긴 나무젓가락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구타하고, 심한 체벌을 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 바 있다. 이후로도 피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원고의 탓으로 보거나, 처가와의 불화를 이유로 수차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많은 경우 자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행되었다. 2023년 6월경 피고는 자녀를 혼계하였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원고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억지로 자녀를 끌어내어 뺨을 폭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2023년 6월경 자녀를 챙기기 위해 분주한 원고에게 자신의 아침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녀들에게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시아버지의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시아버지에게 까지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원고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음날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가 가까스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의 폭력이 저지된 바 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고의 심리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추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려 하였다. 급기야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기로 한 날 피고는 공증인 사무소에 먼저 가기를 요구하며, 피고의 채무 4,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각서의 부담함을 깨달은 원고는 이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청주지방법원 2023. 10.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는 2028. 12. 31.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3.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최소 월 2회 이상). 단 피고는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원고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라.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29. 12. 31.까지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2월 26일, 3월 25일, 4월 22일, 5월 27일)
- ▶ 강사 : 김명수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2월 22일	인간관계와 너의 의미
5월 23일	마음이란?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2월 7일	가장 적절한 것을 택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② (+선택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 감정케어 센터)
3월 13일	잘 한 나를 칭찬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③ (+격려치료)	
4월 17일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5월 8일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6월 12일	널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